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휴게실, 샤워실, 식당, 정비소, 주유소 및 주차장을 모두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차장, 휴게실, 샤워실과 식당, 정비소, 주유소 중 1개 이상의 시설을 갖추면 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요건을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시설기준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7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차장, 휴게실, 샤워실과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 중 1종 이상의 시설을 구비할 것

가. 식당

나. 정비소

다. 주유소.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구비하면 주유소를 구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